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악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명단은 교보악사자산운용(주)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2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 수익증권. 단,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 또는 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7.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

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상장 이후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및 매도호가 공급을 통하여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나, 거래량 부족, 장중 고리율 확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12.31)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E52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발생위험, 액티브 ETF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K-주주가치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FnGuide가 산출 및 발표하는 지수로써 KOSPI지수 구성종목 중 PBR 2x이하 시총 3,000억 이상을 투자대상으로하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저평가 기업 50종목에 투자하는 지수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투자비용	<table><thead><tr><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th><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보수</th><th>지정참가회 사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h>총보수 ·비용</th><th>1년</th><th>2년</th><th>3년</th><th>5년</th><th>10년</th></tr></thead><tbody><tr><td>없음</td><td>0.405</td><td>0.025</td><td>-</td><td>0.4936</td><td>49</td><td>101</td><td>156</td><td>273</td><td>621</td></tr></tbody></table>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2)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3)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 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405	0.025	-	0.4936	49	101	156	273	62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 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405	0.025	-	0.4936	49	101	156	273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p>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p>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 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오차는 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따른 운용의 결과로 발생 가능하며, 비교지수와의 괴리는 매일 공고되는 추적오차율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관리하여 비교지수와의 성과괴리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p>
	액티브상장지수펀드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1작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p>
	상장폐지 위험	<p>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p>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td></tr> <tr> <td>공시장소</td><td>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p>※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과세 수익자	수익자	해당사항 없음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 자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21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투자신탁의 개요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 임] 용 어 풀 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E52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투자신탁(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 배율(음의 배율 포함)로 연동하거나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 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 ① 상장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 ② 상장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 ③ 거래방법: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 규모요건: 신탁원본액이 70 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 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 만좌 이상 일 것
- 유동성 요건: 지정참가회사가 1 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 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기초자산 요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거래소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 자산의 구성요건: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함.
 -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 분의 95 이상
 -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 분의 50 이상
 - ②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 분의 95 이상 편입할것
 -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①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함)
 -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함)
 -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성상장지수펀드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 ▶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최근의 등급을 말함)이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 i)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한국신용평가 AA-, 나이스신용평가정보 AA-, 한국기업평가 AA-
 - ii)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S A-, Moody's A3, Fitch A-
 - iii)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위의 i) 및 ii)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 ▶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함.
 - ▶ 목표 수익률 달성을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 ▶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 ▶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 i) 위험평가액 산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함)을 매일 산출할 것
 - ii)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통할 것
 - ▶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 i) 위험평가액 한도: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이하로 유지할 것
 - ii)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위 ①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 iii) 장외파생상품계약: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③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 ▶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i)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수 있는 것
- ii)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 iii)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 iv)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 v)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 vi)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다음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 i) 현금: 100분의 100 이하
- ii)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채"를 말함)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함): 100분의 95 이하
- iii)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관련사채권(상장된 것에 한함): 100분의 80 이하
- iv) 위의 ii) 및 iii)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함): 100분의 85 이하
- v) 그 밖의 자산: 위의 i) 내지 iv)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 담보유지비율: 위험평가액이 위 ②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위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함)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담보자산 관리방법

- i) 담보의 정산 · 추가 · 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함. 아래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 내용 참조)을 통할 것
- ii)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 iii) 거래상대방 부도 등의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함)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함)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i) 위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 ii)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 iii)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④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제92조제3항제1호(바목은 제외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상장폐지 요건

-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③ 상장폐지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 116 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0 의 2 제 1 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 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 감사의견 부적정 ·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함)등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악사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E52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24.09.05	최초설정(예정)
2024.09.11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정정
2025.02.21.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대표전화 : ☎ 02-767-9600 홈페이지 : www.kyoboaxa-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4.12.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운용경 력년수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운용전문인력>												
최상수	1982	팀장	13 개	6,297 억 원	-	-	-8.07	6.75	12년5개 월	-Vatech 소프트웨어 연구원 -LIG 넥스원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5)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과정]



-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은 일반펀드와 달리 두 가지 시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 이미 발행된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이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같이 매매되는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과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이 설정 · 해지 되는 발행 시장(Primary Marke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발행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의 설정과 해지가 발생하게 되고 유통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지정참가회사가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격을 근접시키기 위하여 차익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는 발행시장에서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통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은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로 유통 시장을 이용하게 되며, 기관투자자들은 차익거래 시나 대규모 설정/해지 시 발행시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K-주주가치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기준)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④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이나 주식 · 채권의 가격, 이 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⑦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⑧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재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을 진행할수 있음

- ETF 매매 편의성 증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증권의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래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경우를 말한다)</p>	
②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예외)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 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채권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④	동일법인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⑤	집합투자증권 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

		<p>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⑥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⑩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

(1) 투자전략

① 운용목표

이 투자신탁은 (주)에프앤가이드가 산출·발표하는 특화 개발된 정량적 테마 비교 지수인 "FnGuide K-주주 가치 지수"를 기초지수로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운용전략

- 기본적으로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구성 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구성 종목 중 개별기업 위험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정성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활용합니다. IPO, 동일 업종내 페어트레이딩, 통계적으로 계절성이 있는 지수/스타일 로테이션 매매, 개별주식선물 차익거래, 유상증자, 분할/합병 등 개별기업 이벤트등이 발생 시 과거 사례 분석과 정량적 Back-testing을 통한 위험 수준 판단 후 위험 수준에 따른 투자를 실행한 뒤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교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추종"과 동시에 "초과수익 운용전략"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①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추종

- 투자 종목 선정 및 비중 조정
- 비교지수 구성 종목을 기초로 INDEX 본부의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여 지수 내 비중 조정. 개별기업 정성적 평가에 따라 위험 가능성 높은 종목군 투자 대상에서 제외
-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유지 및 제외 여부 판단

② 초과수익 운용 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상 정성적 종목 편입
- 비교지수 구성 종목의 정기적 편입 이외 수시로 기업 공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수 특징-기업가치 제고 정책(배당성향 상향, 자사주 매입/소각, ROE 개선) 시행에 맞는 비구성 종목의 정성적 편입
- Event-driven 등 저위험 전략 중심으로 집중 투자
- 보유 종목에서 하기의 다양한 이벤트 기회 발생 시 정량적 Back-testing을 통한 과거 유사 사례 검증 후 전략 실행
- IPO: 제한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높은 승률로 유의미한 알파 창출. 당사 In-house 리서치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가 적정성 및 수급 조건 등을 평가하여 모든 공모주에 대해 참여 여부 및 조건 결정
- 동일 업종 내 페어 트레이딩: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동일업종 내 종목 간의 단기적인 시총 괴리가 발생할 경우 평균회귀를 기대하여 수익을 취하는 전략
- 개별주식선물 차익거래: 개별 종목 이슈로 인해 가격이 급 변동할 경우 주식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괴리 해소를 기대하여 수익을 취하는 차익매매전략

(3)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또는 CB전환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4) 비교지수: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구 분	내 용	구 分	내용
지수명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편입 종목수	50 종목
투자대상	KOSPI지수 구성종목 중 PBR 2x이하 시총 3,000억 이상	섹터 비중*	최대 37.84%
종목선정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우수한 저평가 50종목 선정	종목 비중*	최소 1.50%, 최대 2.51%
가중방식	4가지 재무스코어 바탕으로 스코어 가중	2023년 실현배당 수익률	2.56% (KOSPI지수 1.44%)

출처: FnGuide, 교보악사자산운용, 2024년 05월 13일 종목선정일 기준, 배당선진화 정책으로 2023년 실현배당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낮음

- FnGuide K-주주가치 지수는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저평가 기업 50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구분	내용
유니버스 선정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기초 조건을 만족하고 저평가 되어있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합니다.
편입대상종목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스 선정 기초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2)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제외 3) 유동주식비율 10% 미만 종목 제외 4) 시가총액 3,000억 미만인 종목 제외 5)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원 미만인 종목 제외 6) PBR(순자산가치 비율) 2배 이하인 종목 7)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외 • 최종 구성 종목 성정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의 노력이 드러나는 네가지 재무 스코어 지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당수익률: 종목선정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배당수익률이 3%를 상회하는 종목 2) 자사주 취득 & 이익소각여부: 종목선정일 기준 직전 1년 내 자사주 직접 취득 신고 및 신탁 신규 계약 공시를 한 종목 또는 종목선정일 기준 직전 1년 내

	<p>이익소각을 한 종목</p> <p>3) ROE(자본이익률) 개선: 종목선정일 기준 최근 반기 ROE가 2보다 큰 종목, 종목선정일 기준 최근 반기 ROE가 COE(자본요구수익률)보다 큰 종목</p> <p>4) 배당성향 증대: 종목선정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배당성향이 10%이상 60% 이하인 종목 또는 종목선정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배당성향이 전기 대비 증가한 종목</p> <p>-최종 스코어는 4가지 지표 값 점수의 조합으로 산출되며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해 최종 합산 스코어(Total Score)를 산출합니다.</p> <p>※ROE = 지배주주순이익(종목 선정일 기준 과거 1년합산) / 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 100 ※COE = 종목선정일 기준 직전 반기 수정 EPS / 종목선정일 기준 수정주가 ※배당성향 = 배당금(현금+주식)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alScore(i)= 배당수익률(i)$\times 0.4$ + 자사주취득&소각(i)$\times 0.4$ + ROE(i)$\times 0.1$ + 배당성향(i)$\times 0.1$ * 각지표는 0 아니면 1 값을가진다. ** 배당수익률, 자사주취득 및 소각의가중치는 0.4, ROE와 배당성향의 가중치는 0.1로한다. • 최종 합산스코어 값이 산출된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스코어 상위종목을 최대 50종목까지 선정합니다. 단, 스코어가 동일할 경우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편입을 진행합니다.
구성종목수	50종목(2023년 11월 13일 기준)
비중결정방식	스코어 가중 방식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일)	연 2회 (5, 11월 선물옵션 만기일(D) 이후 2영업일째(D+2))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10년 5월 17일 = 1,000pt
산출기관	FnGuide

※ 이 투자신탁(ETF)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비고
지수관련정보	http://www.fnindex.co.kr	지수발표기관(FnGuide)
PDF내역	https://www.kyoboaxa-im.co.kr	교보악사 ETF 홈페이지
ETF관련 일반정보	http://data.krx.co.kr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지수의 변경을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ETF)으로 패시브ETF에 비하여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비교지수 수익률과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일정 수준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기초지수의 상한가중치에 따른 종목당 최대 편입비 초과분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충분한 사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의 유동성 위험]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의 실시간 기준가를 바탕으로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호가가 존재하여 ETF 거래상의 유동성 위험은 낮습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위험관리기준, 리스크관리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등 내부규정 제정을 통하여 유동성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지표의 급변, 대량환매의 발생, 운용자산에 대한 상환지연의 발생 등에 따라 4단계(정상, 요주의, 준위기, 위기)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정의된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편입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 증권의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ETF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유동성공급자를 통하여 매수·매도 호가공급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의 장중 실시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호가에 따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주문량의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유

	동성공급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매매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액티브상장 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및 상관계수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 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오차는 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따른 운용의 결과로 발생가능하며, 비교지수와의 괴리는 매일 공고되는 추적오차율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관리하여 비교지수와의 성과괴리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와 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 매매시간동안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실시간순자산가치(i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장중 실시간추정순자산가치(i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iNAV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 ETF의 시장가격이 ETF내 기초자산의 가치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NAV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iNAV는 각 증권회사 HTS, MTS 등 ETF 거래가능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격제한폭 차이에 따른 괴리 발생위험	비교지수 내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 투자신탁이 거래되는 시장과의 매매제도 차이(가격제한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분이 당일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투자자 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

	<p>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p> <p>*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p>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p>

	<p>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수준

이 투자신탁은 "FnGuide K-주주가치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교보악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보악사 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위험수준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험자산의 분류

- 가.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나.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다.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라.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2.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투자국가, 환해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함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 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 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악사자산운용(주) 내부기준으로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수익증권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결제) 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1) 설정단위 (CU: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 및 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 및 공고합니다.

(2)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금전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 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기 ②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가 상기 ②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

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유가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 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상기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⑧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상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⑥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 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 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⑫ 상기 ① 내지 ⑪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 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설정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⑯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의 설정절차

①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 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 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 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 청구 일에 청구된 설정 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 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전자등록기관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④ 설정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 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설정절차]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동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 (전자등록계좌부 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홈페이지, 거 래소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발행 (전자등록기관 전 자등록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나. 환매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해지에 따른 환매대금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환매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 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상기 ①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② 내지 ④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상기 ② 내지 ⑤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상기 ②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 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 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상기 ⑦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상기 ⑦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상기 ⑦ 내지 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상기 ⑦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상기 ⑦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상기 ⑪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상기 ① 내지 ⑫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

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⑯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2) 투자신탁의 환매절차

①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 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환매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③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익영업일 (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④ 환매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환매절차]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확정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거래소등)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확인

(3) 설정 및 환매시 자산의 이체방법

- 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 자등록기관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②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상기의 환매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5)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	-

※ 이 투자신탁은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개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한국거래소 (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①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①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⑨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이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35	
지정참가회사보수	0.025	매 1, 4, 7, 10월의 마지막 일을 지급기준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지급
신탁업자보수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0.405	
기타비용 ^{주1)}	0.088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0.4936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0.4936	-
증권 거래비용 ^{주1)}	0.1681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2024.09.23~2024.12.31)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

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2024.09.23~2024.12.3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금융비용 예시: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REPO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대여금이자비용, 차입채권지급이자 등 각종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모펀드의 매매수수료 및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5,773,256
금융비용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투자기간 (단위:천원)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49	101	156	273	6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49	101	156	273	621
--	----	-----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	-	-	-	-	-	-	-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1. 지급기준일: 매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자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 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자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추적대상지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 실현)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자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 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증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자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집합투자규약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 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 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2024.09.23 ~ 202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4.12.31	
운용자산	14,513,363,233	
유가증권	14,244,960,62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268,402,613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62,201,021	
자산총계	14,675,564,254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4,825,566	
부채총계	14,825,566	
원본	15,023,010,000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362,271,312	
자본총계	14,660,738,688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4.12.31	
운용수익	-352,740,427	
이자수익	1,923,974	
배당수익	190,806,146	
매매평가차손익	-570,387,011	
기타수익	24,916,464	

운용비용	16,559,589
관련회사보수	13,911,897
매매수수료	2,121,132
기타비용	526,560
당기순이익	-369,300,016
매매회전율	42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 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기 62,820원)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기 -원)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4.12.31
운용자산	14,513,363,233
현금및예치금	268,402,613
현금 및현금성자산	254,390,386
정기예금	0
증거금	14,012,227
기타예금	0
대출채권	0
콜론	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매입어음	0
대출금	0
유가증권	14,244,960,620
지분증권	14,244,960,620
채무증권	0
수익증권	0
기타유가증권	0
파생상품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건물	0
토지	0

건설중인자산	0
농산물	0
축산물	0
기타운용자산	0
기타자산	162,201,02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정산미수금	25,000
미수이자	466,077
미수배당금	161,492,546
선급비용	0
선납세	0
외화환산손익조정	0
기타미수입금	217,398
자 산 총 계	14,675,564,254
운용부채	0
옵션매도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기타부채	14,825,566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정산미지급금	3,595,000
해지미지급금	0
미지급운용수수료	7,990,655
미지급판매수수료	570,731
미지급수탁수수료	342,430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342,430
수수료미지급금	1,876,220
차입금	0
기타미지급금	108,100
미지급이익분배금	0
부 채 총 계	14,825,566
원 본	15,023,010,000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이익잉여금	-362,271,312
자 본 총 계	14,660,738,688

부채 및 자본 총계	14,675,564,254
총좌수	1,500,000
기준가격	9773.83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4.09.23 ~ 2024.12.31
운용수익(운용손실)	-352,740,427
투자수익	192,792,940
이자수익	1,923,974
배당금수익	190,806,146
수수료수익	62,820
임대료수익	0
기타투자수익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83,131,627
지분증권매매차익	186,124,094
채무증권매매차익	0
파생상품매매차익	595,852,200
외환거래매매차익	0
지분증권평가차익	201,155,333
채무증권평가차익	0
파생상품평가차익	0
외환거래평가차익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553,518,638
지분증권매매차손	241,866,592
채무증권매매차손	0
파생상품매매차손	504,765,530
외환거래매매차손	0
지분증권평가차손	806,886,516
채무증권평가차손	0
파생상품평가차손	0
외환거래평가차손	0
기타손실	0

기타운용수익	24,853,644
운용비용	16,559,589
운용수수료	12,022,747
판매수수료	858,722
수탁수수료	515,214
사무수탁수수료	515,214
매매수수료	2,121,132
이자비용	0
임대자산관련비용	0
기타운용비용	526,56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0.0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69,300,016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295440.01

라.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 원]

구분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거래금액(A)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거래금액(A)	금액(B)
주식	28,477,248,280	5,320,770	0.02	-	-	-
장내파생	2,106,728,700	421,230	0.02	-	-	-
합 계	30,583,976,980	5,742,000	0.02	-	-	-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마.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79,459	5,506,941,190	240,696	5,565,998,750	12,237,024,517	45.48	12.91

주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9/23~2024/12/31	1	8,012	2	16,060	0	1,029	2	14,661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4/12/31	2022/01/01 ~ 2024/12/31	2020/01/01 ~ 2024/12/31	(%)
파워K-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주식]	2024-09-23					-8.80
비교지수	2024-09-23					-13.87
수익률 변동성(%)	2024-09-23					14.54

주1) 비교지수 :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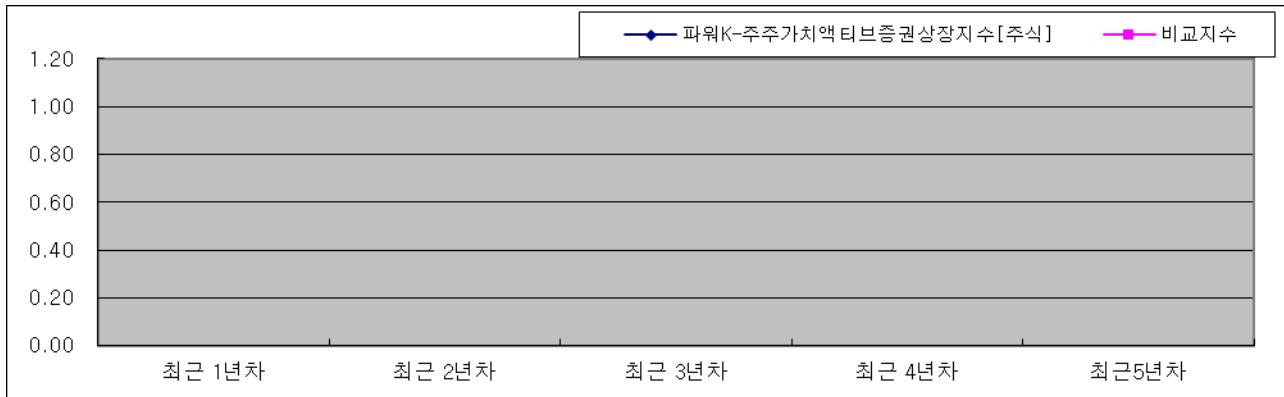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0/12/31
파워K-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주식]	2024-09-23					
비교지수	2024-09-23					

주1) 비교지수 : FnGuide K-주주가치 지수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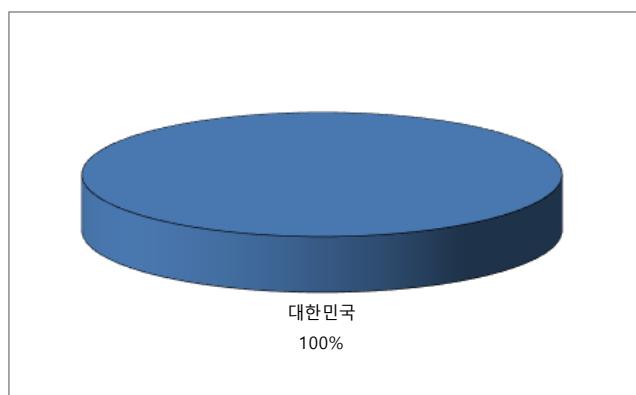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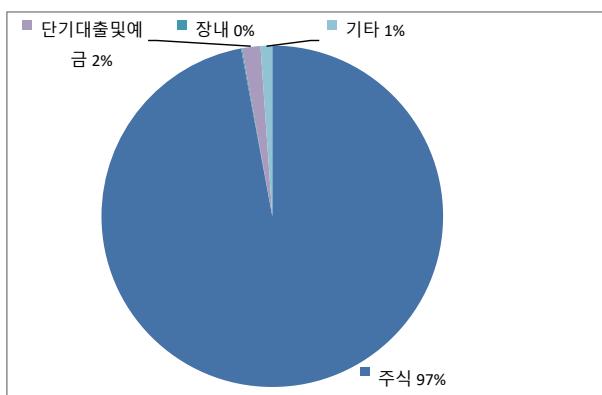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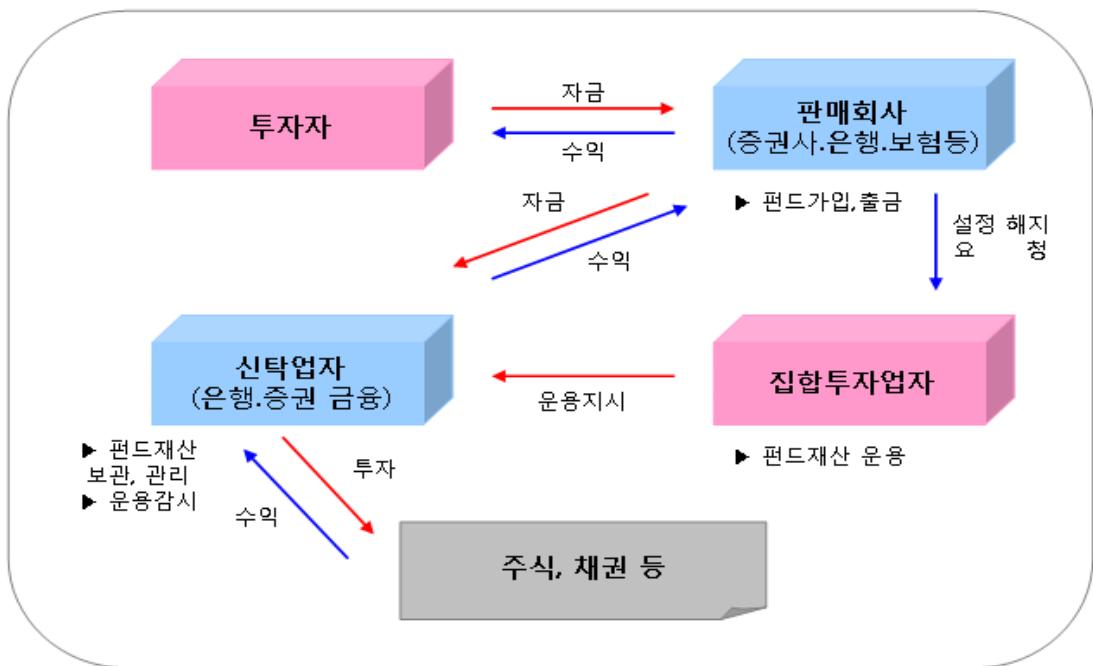
[2024.12.31 현재 / 단위 : 백만,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 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14,245	0	0	0	14	0	0	0	0	255	162	14,676
	(97.07)	(0.00)	(0.00)	(0.00)	(0.10)	(0.00)	(0.00)	(0.00)	(0.00)	(1.74)	(1.10)	(100.00)
자산합계	14,245	0	0	0	14	0	0	0	0	255	162	14,676
	(97.07)	(0.00)	(0.00)	(0.00)	(0.10)	(0.00)	(0.00)	(0.00)	(0.00)	(1.74)	(1.10)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주)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주)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3.12.31	'22.12.31	항 목	'23.01.01~'23.12.31	'22.01.01~'22.12.31
현금 및 예치금	529	536	영업수익	411	415
유가증권	40	38	영업비용	253	254
대출채권	3	4	영업이익	158	161
유형자산	62	80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142	129	영업외비용	0	1
자산총계	776	788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158	160
예수부채	0	0	당기순이익	125	123
기타부채	127	142			
기타부채	127	142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349	34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자본총계	649	646			
부채 및 자본총계	776	788			

라. 운용자산규모(투자일임자산 제외/2024.12.31기준/단위:억 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665	69,746	5,454	0	5,745	15,325	0	240	14,005	864	77,174	197,223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1566-2566)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 ib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80-0400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5월 설립 (www.koreabp.com)

회사명	NICE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nicepni.com)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11년 6월 설립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

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的情形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

의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30 이상 판매 · 위탁판매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반주식매매<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증권사: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2) Cyber주식매매<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증권사: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3) 일반채권 매매<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

	<p>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CP의 주요 증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 평가주체: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p>4) 신규 발행 채권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p>5) 외화표시채권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증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p>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증권사: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포트폴리오 매니저 <p>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중개사: 증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포트폴리오 매니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불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상장지수투자신탁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